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599호 2025. 3. 17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○하천점용 허가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5-32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3월 17일

예 천 군 수



구 분	하천점용 허가
하 천 명	한천(지방하천)
점 용 자 주 소	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170
위 치	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581번지 외 4필지 (동본리 580,581,557-4, 남본리 308-6,310-1)
점용면적	일시 : 122.49㎡ 영구 : 57.02㎡
점용목적	공작물의 설치
사업개요	지장전주 이설 공사에 따른 송전선로 매설 및 전주 설치
점용기간	일시 : 2025년 3월 17일 ~ 2025년 4월 20일 영구 : 2025년 3월 17일 ~ 영구